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[고영찬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727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5. 5. 29.

발 의 자 : 고영찬 의원

찬 성 자 : 정순기 의원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장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점차 늘어가는 각종 물놀이장을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조례의 적용 범위와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물놀이장 관리 및 이용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이용 제한 및 보험 가입(안 제7조 및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5조의2
 - 2)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2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해당없음

2) 입법예고: 2025. 5. 30. ~ 2025. 6. 5.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설치되는 물놀이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물놀이장”이란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9호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.
2. “이용자”란 여름철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가 설치한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안전요원”이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·운영하거나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설치·운영하는 물놀이장에 적용된다.

제4조(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구 안에 상시 또는 임시로

운영되는 물놀이장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물놀이장 운영 기간 및 시간 등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, 구 누리집(홈페이지)과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한다.

제5조(물놀이장 관리)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에 대하여 수시로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.

③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(물놀이장 이용)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. 다만,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.

②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 반드시 안전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,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.

제7조(이용 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물놀이장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
2. 음주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
3. 고열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

4.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(장애인 보조견 제외)

5.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8조(보험 가입)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□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

[시행 2021. 6. 23.] [법률 제17695호, 2020. 12. 22., 일부개정]

제15조의2(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)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,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[본조신설 2016. 1. 7.]

□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

[시행 2023. 2. 6.] [행정안전부령 제377호, 2023. 2. 6., 일부개정]

제16조의2(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)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, 2019. 5. 15., 2023. 2. 6.>

1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
2. 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
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
4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
5.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별표 10의2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

갖춘 사람

6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

② 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
2.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
3.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
4.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16. 8. 12.]